

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00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11월 28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변호사 비용 지급이 행정심판의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고,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관련 조문을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변호사 선임 비용 근거를 삭제함(안 제4조제2항 삭제).
- 나. 비용지원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변호사 선임 근거를 삭제함(안 제5조제2항제4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안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세금계산서 사본 등 그 밖의 증빙자료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지원금 한도) ① <u>시장은</u>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지원대상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「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」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의 한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.</u></p> <p>제5조(지원금 지급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2. 집행정지 결정서 3. 본인명의 통장사본 4. <u>세금계산서 사본(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만한다)</u> 5. 신분증 사본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지원금 한도) <u>시장은</u>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<삭제></p> <p>제5조(지원금 지급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2. 집행정지 결정서 3. 본인명의 통장사본 4. <u>세금계산서 사본 등 그 밖의 증빙자료</u> <p>5. 신분증 사본</p> <p>③ (생략)</p>

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처분의 위법·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행정심판”이란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(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.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)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. 다만,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금 한도)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금 지급절차)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

하여야 한다.

1.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
2. 집행정지 결정서
3. 본인명의 통장사본
4. 세금계산서 사본 등 그 밖의 증빙자료
5. 신분증 사본

③ 시장은 비용지원청구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금 신청 통지의무) 시장은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금 신청기간)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「국가배상법」 및 「민법」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. 다만,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.